

경찰,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대비 분주

서울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경호 안전 속 시민 불편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과 관저를 서울 용산구로 이전하기로 하자 대통령 경호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경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가수반 경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안전

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호 계획과 인력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며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최 청장은 “경호상 안전과 시민불편 최소화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대통령경호처와 긴밀히 협력해 종합적 대책이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구역이 지정된다. 경호 구역 지정에 따라 질서유지나 출입통제, 집회시위 등 여러가지 안전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대비 원칙은 같다.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용납할 수 있으나에 대한 원칙은 동일하다”며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계산해 시민 불편 최소화의 관점, 집회시위 보장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 수위가 어디고 장소 제한을 어디까지할지 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또 “집무실이 이전하면

경찰서마다 업무량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업무량 변화를 분석해 이전 시행 전에 인력조정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필요 인력과 치안 요소 등을 수시로 정리해 분석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윤 당선인은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사용할 계획이다. 최 청장은 지난 23일 직접 서울 용산구를 찾아 윤 당선인 관저와 집무실 사이 출·퇴근길 동선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유나기자



희망브리지 해외봉사단,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서 난민 구호 활동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전쟁 피해로 시름하는 난민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브리지 해외봉사단 단원이 폴란드 프세미실에서 우크라이나 내 보호소 난민들에게 지원할 영양제 및 일반 의약품을 조달해 박스에 담고 있다. (사진=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제공)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8년전 음주운전’ 군인 “시효 지나, 징계 못해”

8년전 음주운전을 이유로 군인을 징계할 수 있을까. 1심은 징계할 수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한규현·김재호·권기훈)는 부사관 A씨가 소속부대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6월5일 새벽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같은해 7월 확정됐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부대장은 2019년 감사원 통보를 통해 A씨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같은해 11월 부사관 진급을 위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첫 징계는 정지 3개월이었지만, 군단의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감봉 3개월로 징계를 줄였다. A씨는 이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변론과정에서 A씨 측은 “형사처분 사실에 관한 보고 의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4년 6월에 발생한 것으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시효가 완성된다.”

징계는 2019년에 이뤄져 보고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민간법원 처벌 전력 보고) 지시는 군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자와 민간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숨긴자 사이에 발생하는 인신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부대장은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A씨가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됐다. 그때부터 부대장이 A씨를 징계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같은 해에 징계가 이뤄진 이상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2016년도 육군지시(진급자에게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사항을 보고하라는 지시) 유효기간인 2016년 8월부터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시효를 요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판결 사이에 대법이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부사관이 징계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하지 않을 경우 육군규정이 정한 보고기한을 넘으면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는 것이다.

육군참모총장은 부사관 진급심사 공정성을 위해 진급선발 대상자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부사관 진급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에 민간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고하라는 규정이 포함된다.

최이슬기자



광양경찰, 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 위한 찾아가는 치안간담회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최근 옥곡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옥곡면 이장단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치안간담회를 가졌다. (광양=심종섭기자)



나주경찰, 유관기관 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혁신도시 금천중학교 정문 앞에서 경찰서, 나주교육지원청 등 총 2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경찰, 무인방범시설 확충 붐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강진경찰서는 22일 강진군 통합관제센터에서 군청 교육지원청 다산배아체 이장단 연합회 강진군지회와 ‘안전한 강진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화순소방,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 실시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대형재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개인별 임무 숙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장비(텐트 등) 숙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광주 남부소방,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등 점검에 나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3월 18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 동부소방, The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교육 추진

광주 동부소방서는 The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 대상인 광주용산NH 1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 대상 지난해 소화기 사용법 교육에 이어 공동주택 내 소화전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슬비기자)

‘HDC 본사 겨냥다’ 붕괴 사고 전방위 수사로

공법 변경·동바리 해체·콘크리트 불량으로 ‘와르르’

경찰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책임 소재, 사업 과정 전반의 각종 비위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8일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붕괴 사고의 직접 책임이 확인된 공사 관계자 15명, 사업 과정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5명 등 총 20명을 형사 입건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의 안전 관리 미흡, 민원 처리·인허가 과정 적정성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법 변경·동바리 해체·콘크리트 불량...16개층 붕괴로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 등 전문기관 감정·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PIT층(설비층) 공법 변경·최상층 타설에 따른 초과 하중

▲하부층 동바리 철거 등을 붕괴 원인으로 꼽았다.

최상층인 39층 바닥 시공을 구조 검토도 없이 테크플레이트(요철판)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바로 아래층인 PI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T자형 역보)를 설치해 하중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아래 3개 층(36·37·38층) 수직 하중 지지대(동바리)도 설치하지 않아 사고 당시 붕괴에 취약한 구조였다고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또 미흡한 품질 관리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이르지 못해 39층 바닥 등이 1차 붕괴된 뒤 38층

부터 23층까지 16개 층 연속 붕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시공사·하청업체부터 감리마저 총체적 과실

수사본부는 이번 붕괴 사고가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 등의 과실이 복합 작용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초과하중이 발생하는 설계 상 큰 변화임에도 구조 검토 없이 하도급 업체가 PIT층에 테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무단 변경토록 했다. 공사기간 지연을 우려해 구조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콘크리트 타설층 아래 3개 층에 동바리 설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 소속 품질 관리자는 레미콘 업체의 콘크리트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정 강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은 구조 검토나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없이 공사 진행 중인 건물 수직 하중을 버텨낼 동바리를 해체했고, 공사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은 채, 공법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T자형 역보를 설치해 하중을 크게 증가시켰고, 혹한의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면서도 보양 천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콘크리트 양생 품질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수사본부는 전했다.

감리 역시 공사 주요 단계마다 설계 도서에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고, 무단 변경이 확인되면 시정 또는 공사 중지 등 조치를 해야 하지만 묵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바리 설치 여부, 콘크리트 품질 시험을 직접 하지 않은 채 타설을 승인하는 등 공사 전반에 걸쳐 감리 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

붕괴 원인과 직접 연관이 있는 입건자 15명 중 8명은 붕괴 사고 당시 전·현직 현장소장, 시공·안전 분야 임직원 6명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다. 나머지 7명은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업체 소속 임직원 4명과 감리 3명이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겨냥’ 사업 전반 전방위 수사

수사본부는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 결과 화정아이파크 1·2단지(1·2공구) 신축현장마다 시공 품질 관리담당자 3명씩 총 6명을 뒀으나, 실질적으로 1명이 도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장 감시 인사 발령이 붕괴 사고를 발생케 한 아파트 현장 품질 부실 관리의 근본적 배경으로 판단한 수사본부는 본사 차원의 책임 소재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불법 하도급, 부지 매입·세금 탈루, 업체 선정 비위, 인허가 행정·민원 처리 적정성 등도 수사 대상이다. 고공·노무 계약 경위와 근로자 치료비 부담 등으로 미뤄, 콘크리트 타설 하청 업체가 관련 공정을 장비 대여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 대표가 아파트 부지 매입 후 이전 등기를 생략하고, 양도세 등을 포함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의 관련성을 수사하는 한편, 국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서선욱기자